제 35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대방제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9년08월1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 소	신고사항
이**	이** 1941-07-06	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	재등록
한**	한** 1948-09-13	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	재등록
동**	동** 1962-11-01	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6길	재등록
김**	김** 1980-09-18	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김숙영 문의전화 : 02-820-2815)

2019년 08월 08일

신대방제1동장 인